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분석과 시사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nd Its Implications

전병주*, 김건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yeong-Joo Jeon(okjbj@hanmail.net)*, Keon-Ho Kim(kkh630828@hanmail.net)**

요약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어린이집 | 아동학대 | 판례 | 학대 유형 | 양벌규정 |

Abstract

In Korea,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occurs continuously, and it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has intensified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in child care centers, and through strong countermeasures and prevention against child abuse, it enacted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in order to enable children to become healthy members of society.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gasped the legal application on child abusers, and analysed how the punishment for abusers chang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through examining precedents of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21 case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were collected by searching homepage of the supreme court and each district court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sentence of the defendant did not increase greatly, and it differed from the criminal identification of the people in cases of child abuse on which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was applied.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emand for more rigorous legal application for abusers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 keyword : | Child Care Centers | Child Abuse | Precedent | Abuse Type | Joint Penal Provision |

I. 서론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4년보다 17% 증가한 11,71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아동학대의 82%(9,641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4%(432건), 2%(207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모든 학대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모에 의한 학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더욱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2014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세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걱정과 분노를 표출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의 취득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법률 제12341호에 의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며(제7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였다(제10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잇을 만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학대사건은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는 전년도보다 각각 44%,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더욱이,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 수는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8명(잠정)으로 또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2] 정부의 학대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원장들의 학대에 대한 인식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자질문제도 있으며, 무상보육에 따른 아동이 급증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의 충분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3][4]. 이와 함께 학대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용을 못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전제가 되며[8], 이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반드시 요구될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와 관련한 판례를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보고되어 학대 가해자의 처벌과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먼저 부모가 아동학대를 범하여 그 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분석한 연구[5]가 있었으며,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아동에 대한 불법행위를 분석한 연구[6],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민형사상 사건, 행정사건을 분석한 연구[7] 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분석하기에 미흡하였으며, 최근에 제정된 아동학대특례법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의 판례를 분석하고자 했으나, 유치원에서의

학대사건은 대법원 홈페이지, 각 지방법원의 홈페이지 등에 대한 검색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제도 정비를 통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며,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판례분석은 사법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질적연구 방법이며,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제도적·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5][6].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판례의 동향과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조사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기 전·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판례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수집하였고, 여기서의 검색은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 ‘보육교사’, ‘원장’, ‘학대’를 주제로 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서 사본을 신청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대사건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판시사항의 본문검토가 가능한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1건의 판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판례의 본문을 분석하여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판결의 사실관계, 판결에서 고려된 양형기준과 이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I. 분석 판례 및 주요 내용

1. 분석대상 판례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되기 이전 사건, 즉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 17건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사건 9건으로 구성되었다(21건의 판례 중 5건은 피고인이 2명).

이하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특례법의 적용 여부로 판례를 나누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징역 및 벌금형 포함)이 선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양형 기준 및 이유 등을 살펴보았다.

2.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전의 판례

2.1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867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거나, 손바닥 내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향해 장난감 블록을 던졌다. 그리고 다른 원생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칭얼대며 운다는 이유로 교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불을 끈 뒤 가둠으로써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만 0세 내지 2세의 영유아들을 학대한 것으로서, 피해 영유아들의 연령, 폭행의 부위나 정도 등의 학대행위의 내용,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만, 피해 영유아들 중 일부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하였다.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29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표 1. 분석대상 판례

구분	선고일자	사건번호	내용	선고
1	2017. 2. 9.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08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제7조: 신체적 학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2017. 2.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합420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제7조: 신체적 학대)	징역 4년
3	2017. 1. 12.	서울고등법원 2016노1839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제7조: 신체·정서적 학대)	징역 1년, 벌금 5백만원
4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101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제7조: 정서적 학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5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8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제7조: 신체·정서적 학대)	징역 1년, 벌금 3백만원
6	2016. 5. 12.	대법원 2015도6781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정서적 학대)	벌금 2백만원
7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173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정서적 학대)	벌금 5백만원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제74조: 정서적 학대)	벌금 1백만원
8	2016. 2. 5.	인천지방법원 2015노2736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특례법(제7조: 상습 정서적 학대)	징역 1년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제74조: 정서적 학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백만원
9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51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정서적 학대)	벌금 150만원
10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116	어린이집 조리사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정서적 학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11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492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정서적 학대)	벌금 3백만원
12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256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13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2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제7조: 신체·정서적 학대)	징역 2년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제74조)	벌금 5백만원
14	2015. 6. 11.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25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제7조: 신체·정서적 학대)	징역 1년 2개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제7조: 정서적 학대)	벌금 4백만원
15	2015. 6. 4.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신체·정서적 학대)	벌금 1백만원 (선고유예)
16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31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신체적 학대)	벌금 3백만원
17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916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신체적 학대)	벌금 4백만원
18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57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신체적 학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제74조: 신체적 학대)	벌금 3백만원
19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290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신체·정서적 학대)	징역 1년
20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493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정서적 학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1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867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제17조: 정서적 학대)	징역 8월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입에 거즈 손수건을 물려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우유를 먹지 않거나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아동에게 입을 막고 상습으로 때림으로써 아동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 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적게는 수개월, 많아야 만 2살이 채 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육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었고, 손해배상금으로 일부를 공탁했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많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

3.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의 판례

3.1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25 판결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학대특례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고, 보육교사에게 정서적 학대에 따른 아동학대특례법을 적용하여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 아동들이 운다는 이유만으로 물티슈나 손수건을 입 안에 넣었고, 그 상태로 약 2~3 시간 동안 둔 행위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거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간식과 점심도 주지 아니한 채 상당 시간 피해자들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등 그 범행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리고 어린 아동들은 학대행위를 당하더라도 이를 방어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고 그 정신적 충격 역시 더 클 것이므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어 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급까지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이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교실 불을 꺼버리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을 교실에 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훈육의 정도와 방법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와 같은 범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3.2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2 판결

이 사건에서 보육교사는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가 적용되어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되었다.

보육교사는 아동들을 상대로 울동을 가르치던 중, 아동들이 울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이 쓰

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 앉혔다. 또 다른 아동에게는 식판에 남아 있는 음식을 강제로 입에 넣었고, 피해아동이 이를 건디지 못하고 토해내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세게 때려 아동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토사물이 떨어진 바닥으로 기어와 손으로 토사물을 집어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을 다른 아동들에게 목격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가 평소 아동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아동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시로 학부모와 면담을 실시하지도 않고 어린이집에 상주하지 않는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원생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다.

3.3 인천지방법원 2015노2736 판결

보육교사는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원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아동복지법 제74조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되었다.

보육교사는 16명의 아동에게 원아수첩을 바닥에 던지거나 아동들 쪽으로 던지는 등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이 없거나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 또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수단, 한계를 넘어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상습범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전과가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을 갖추었으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피고인(어린이집 원장)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을 알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어린이집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4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법원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범한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특별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만2~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옆에 다가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수회 짓눌러 주저앉히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동의 양손을 위로 들어 올린 뒤 힘껏 내려 앉혀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피해아동의 입속에 숟가락을 강제로 집어넣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복원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학대행위 자체가 일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심각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는 자라나는 영유아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오며,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로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거듭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더 이상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하였다.

3.5 서울고등법원 2016노1839 판결

법원은 피고인(보육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아동학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육교사는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오히려 눕히고, 이불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영아의 몸을 감싼 이불 양쪽을 깔고 앉아 발버둥 치는 영아를 15분간 방치하였다. 피해 영아는 사건 당시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1달 뒤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법원은 폐쇄회로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아동의 신체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1심에서 임신 중임을 고려하여 구속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 등이 있어 법정 구속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수회에 걸쳐 신체를 학대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 및 피해 결과가 중하며, 유족들은 평생 아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하며 합의가 되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3.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합420 판결

법원은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특별법의 신체적 학대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3살 아동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아동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고 팔과 다리로 13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압적으로 재우려 했으며, 아동이 움직이지 않자 교실에서 벗어났다가 50분 뒤에 돌아왔다. 이에 법원은 아동복지를 잘 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도 아동을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IV.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

1. 판례의 동향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 21건 대하여 아동학대특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판례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2건(징역 8월,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5건(집행유예 1년 2건, 2년 3건), 벌금 10건(1백~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판례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및 벌금 2건(징역1년 및 벌금 3백만원, 징역1년 및 벌금 5백만원), 징역 4건(징역 1년, 1년 2개월, 2년, 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각 집행유예 2년), 벌금 1건(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학대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감소하고 징역형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법원이 아동학대특례법을 적용하여 학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일부 사건에서 형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것은 피해자가 많거나 피해 아동이 사망했기 때문이며 아동학대특례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2 판결은 보육교사의 폭행 등 유형력 행사가 당사자(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모든 아동들이(13명) 그 장면을 목격하여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가 많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합420 판결은 보육교사가 아동을 강제로 재우다 사망한 사건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되었다. 징역 1년 및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016노1839 판결은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여론, 아동학대특례법의 입법 의도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대행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결에 따라 학대 여부와 학대의 유형이 다르게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혐의가 함께 인정될 때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장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가해자와 함께 처벌하는 것이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판례의 쟁점 및 시사점

2.1 학대에 대한 인식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합420 판결에서 피고인은 발버둥 치면서 거부하는 피해 아동을 이불과 베게에 의해 질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강제로 재우려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미필적 인식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4년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고, 아동에게 강압적으로 이불을 덮어 잠을 재우다가 질식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단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法感情)에 비추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 학대 등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고 살인죄의 형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살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16년으로 되어 있으나,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7년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며(가중 양형기준 6~9년), 비단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가중요소로 적용 받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례에서 보육교사에게 4년형을 선고한 것은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08 판결에서 신체적 학대를 범한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특례법을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보육교사는 아동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에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기도 했다. 다음날에도 아동을 밀치고 바닥에 세계 내려놓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고 넘어진 아동을 일으켜 세운 뒤 손으로 턱을 때렸고, 이 과정에서 아동을 교실 출입문에 얼굴을 부딪치기도 하였다.

이에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이며,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고, 아동의 부모가 업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현재 피해 아동의 충격이나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법조인들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학대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실제 판결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대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아동과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2 학대의 정의 및 유형

분석대상 판례에서 발생한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구분된다. 아동복지법은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도6781). 반면에 동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그리고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도6015).

그러므로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867 판결은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때리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손상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신체의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5도6781).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867 판결은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학대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자 하는 법원의 고민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2015노2736 판결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특례법을 적용하여 정서적 학대에 따른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신체적 학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그들의 아동이 물병을 제대로 잡지 않아 교실 바닥에 물이 흘렀다는 이유로 피고인(보육교사)이 아동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피해 아동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린 이집 CCTV 영상만으로 폭행의 강도, 피해 정도를 구

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그 당시 아동들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함이 있었다거나 부모들이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CCTV에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당해 아동의 피해가 '상해'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의 제정 취지상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당해 사건은 보육교사에게 신체적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통해 범죄 사실을 소명해야 하지만, 아동학대는 물적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아 CCTV에 녹화된 유형력 행사는 적극적으로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중합 정도와 학대 가해자는 재학대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동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며 보다 충실한 양형심리가 요구된다.

2.3 어린이집 관리자의 주의와 감독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에서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및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제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도5824).

이를 근거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2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5노2736 판결은 아동학대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74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불법적 행위 내지 매우 위험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고, 학대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집은 조직 특성상 종적이고 종속적인 업무분장이 진행되므로 보육교사에 의해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이 자신의 지위에 따른 업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벌조항을 적용하여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특례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아동학대특례법의 입법 의도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원은 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인식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양형기준을 조속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재판 과정에서 아동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의 적절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벌조항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발견과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색된 판례를 통해서 해당 사건만

을 분석하였으므로 보다 다양한 판례를 수집하고 유치원 학대사건 등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관련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 [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발생현황, 보건복지부, 2017.
- [3] 황인옥,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교육, 제24권, 제3호, pp.329-345, 2015.
- [4] 강상, 유수정,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8권, 제4호, pp.145-165, 2014.
- [5] 이경은, “아동학대 가해부모의 법적 조치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pp.183-202, 2015.
- [6] 박연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2호, pp.31-49, 2014.
- [7] 장원수, 최미숙, “한국 유아교육기관 판례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제20권, 제4호, pp.489-515, 2016.
- [8] 이세원,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판결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2호, pp.113-136, 2015.

저 자 소 개

전 병 주(Byeong-Joo Jeon)

정회원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보장, 보건의료, 노인복지

김 건 호(Keon-Ho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95년 3월 : 변호사
- 1998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2006년 3월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법조윤리, 민사소송, 도산